

부산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54514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 등]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5451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466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고, 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

변론종결 2022. 11. 24.

판결선고 2023. 1. 1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4666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5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580,000,000원 중 138,894,2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들 주장의, 2012. 6. 25.부터 2018. 10. 1.까지의 지급금액 합계 410,412,000원이 이자가 아니라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든 근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약 위 돈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이었다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600주를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서 반환을 요청한 금액이 610,412,000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2억 원을 요구한 점 등까지 보태어보면,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410,412,000원이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욱, 판사 박운삼, 판사 최은정